

보험종목별 요율산정에 균형을 잃고 있다

1. 우리나라 요율체계의 특성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상품의 원가에 상당하는 것이 보험금과 사업비지만 그 중 전자는 사전에 알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즉 claim cost의 정확한 수치는 ·群의 보험계약이 모두 만료가 되고 이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액수가 확정된 후라야 비로소 알 수 있다. 보험계약체결시에는 claim cost를 손해발생의 통계적 확률에 의거해서 이론적으로 예정하는데 불과하다. 더욱

기 통계기술상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claim cost는 다수의 물건의 전체에 대한 평균치에 지나지 않고 개개 물건에 있어서는 위험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의 측정에는 고도의 기술축적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부족등으로 외국요율체계를 그대로 도입해 오거나 외국의 것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해 왔던 것이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가 발족되기 전까지의 실정이었다.

2. 요율산정의 원칙

전술한 바와 같이 claim cost가 예정원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 보험금은 관리불능비용이기 때문에 요율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개 원칙이 있다.

첫째 보험료는 지나치게 높아서도 안되고 또 낮아



강 원 회

보험연수원·전임강사

서도 안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충분해야 된다는 적절성(adequacy)이 요청된다. 따라서 실제 손해율이 예정 손해율에 접근하여야 이상적이다.

둘째 동질위험집단 안에서의 공정한 부담이어야 한다는 공정성(equity)이다.

세째 보험료는 보험구매자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경제성(economic feasibility)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액, 보상한도액, 담보범위, 공제액등에 신축성을 부여

하여 보험구매자의 소득이나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판매가능한 가격(salable price)을 유지해야 한다.

네째 보험료는 사고예방노력을 유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방심하여 사고예방에 힘쓰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계약자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손실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요율산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때 안정된 시장형성과 내실이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손보시장의 경우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3. 문제점의 분석

첫째 보험종목별로 요율산정상의 원칙인 적절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균형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수년간 예정손해율을 밀

66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방재기기는 화보협회 부설
방재시험소의 합격품을 사용할때
보험요율할인의 우대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99

도는 양호한 성적인데 반해 자동차보험, 근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기타 종합보험등은 예정손해율을 상회하는 악화된 실적으로 적자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율에서 흑자를 보인 종목의 이윤이 적자를 보인 종목의 손실을 메워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위험집단이 서로 다른 단체 간에 형평의 원칙이 깨어지고 있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손해율과 예정손해율 간에 현격한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위험도에 부합되게 요율의 조정이 있어야 함에도 여러가지 정책적 배려에서 이것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해외근재보험의 만성적인 적자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근본적인 요율조정작업을 하지 못했던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비판도 일제하였다.

세째 보험요율중에서 claim cost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부가보험료의 산정이다. 현재 보험종목별로 합산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각 원수사의 간접비 배분이 같은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 분야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통일기준에 의한 배분만이 보험원가중 경비부분의 과학적인 산정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분야라 하겠다.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가 발족한 후부터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범업계적인 지원이 더욱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4. 개선방안

첫째 보험요율산정에 있어서는 손해억제의 증진기능(promotion of loss control)이 배가될 수 있는

요율체계의 확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박 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이용되고 있는 할인·할증제도(bonus/malus system)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 근재보험의 경우에는 소급요율제도(retrospective rating)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조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공장이나 기관·기계보험의 대상에 대해서는 underwriting inspection이나 방재·안전진단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보험요율의 할인혜택이 커지도록 요율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보험가입자의 방재사상 보급에 일조가 될 것이다.

이 밖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화재손해 경감기기에 대해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부설된 방재시험소의 합격품 사용에 대한 요율할인 우대조치등도 소망스러운 제도가 될 것이다.

둘째 보험료 산정의 경제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제액이나 담보범위의 축소등 보다 신축성 있는 요율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부가보험료의 적정성이 보험종목별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료가 영세한 가계성보험에 있어서 기업물건과 대차없는 부가보험요율이 책정되어 있을 경우 판매조직은 교통비도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보수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의욕은 감퇴되고 보험공급은 중단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째 보험요율산정상의 제원칙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신속한 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위험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몰일가주의가 고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요율검증제도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다섯째 요율산정의 근간은 실적통계의 치밀하고도 성의있는 집적이다. 따라서 범업계적인 통계처리 공통기준에 의한 자료의 집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과당경쟁의 지양이나 요율체계의 통일성 유지 등의 당위성을 위해서도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의 기술축적에 기대하는 길이 우리나라 손보업계의 요율체계의 안정화에는 가장 지름길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